대구사이버대학교 교원임용 규정

(제정 2005.02.03.)
(최종개정 2024.09.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유지·경영하는 대구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 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구분) ①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비전임교원 등으로 구분한다.
②본 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고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비전임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④<삭 제>
⑤<삭 제>
제3조(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보직) ①교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직에 임하여야 한다.
②부총장, 대학원장 및 처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
③제2항 이외의 보직은 총장이 보하되, 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부)장, 전공주임교수의 임면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임용

제5조(임용시기) 교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용절차 및 임용기간) ①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함
나. 부교수 및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위의 가, 나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임용되는 교수 및 부교수는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내에서, 조교수는 1회에 한해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 보수 : 교직원 보수규정에 의함
3.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임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을 기준하여 계산하되, 재임 중에 승진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③교원의 임용기간이 학기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④교원이 동일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고 근무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교수 : 12년
2. 부교수 : 8년

제7조(당연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계약임용기간중 제6조 제4항에 정한 연한 내에 승진하지 못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동일 직위 최고 근무연한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 퇴직
2. 제6조에 의한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을 때
3.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될 때
4.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자가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복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8조(해임 및 취소) 교원을 임용했을 경우라도 관할청으로부터 임용보고가 수리되지 않을 시는 당연히 그 임용이 취소된다.

제9조(결격사유) 교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임용일자의 소급금지) 교원의 임용은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그 기소일자로 직위해제 하는 경우
2.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자가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휴직기간 만료일자로 직권면직 시키는 경우

제11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학교법인 영광학원 교직원정년규정에 따른다.

제12조(겸임근무)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연구소 등에 겸임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강의, 연구 등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총장은 본직기관의 장과 겸임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겸임근무를 제청하여야 한다.

③겸임근무하는 교원의 업적평가는 본직기관에서 실시하고, 연구실, 연구비, 연구년 등 행정지원은 본직기관에서 담당하되, 겸임근무로 인해 요구되는 사항은 겸임기관에서 담당한다.

④겸임근무하는 교원은 겸임기관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교원인사, 논문지도, 교수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신규임용

제13조(신규임용) ①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분야의 저명한 석학, 전문가 또는 외국인 등을 초빙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교원의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교원의 신규임용은 매 학기초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신규임용 자격) ①신규임용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직 명	연구실적	교 육 및 연 구 경 력
조교수	300점	-박사학위소지자 -특수분야 : 석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및 연구경력의 합이 5년 이상
부교수	800점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및 연구경력의 합이 11년 이상(교육경력 6년 이상 포함) -특수분야 : 석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및 연구경력의 합이 11년 이상 (교육경력 6년 이상 포함)
교 수	1200점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및 연구경력의 합이 16년 이상(교육경력 11년 이상 포함) -특수분야 : 석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및 연구경력의 합이 16년 이상 (교육경력 11년 이상 포함)

②제1항의 연구실적은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하되, 연구실적의 인정범위는 교원신규채용지침에서 정한다.

제15조(경력연수환산) ①교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교육 및 연구 경력연수의 환산기준은 교원신규채용지침에서 정한다.

②경력연수는 학사학위 취득 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취득 후부터 계산한다.

③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시에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한 기관에서의 경력연수만을 인정한다.

제4장 승진임용

제16조(승진임용 시기) 교원의 승진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제17조(승진심사) ①총장은 승진심사 대상자를 승진임용 예정일로부터 4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②승진심사 대상자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을 제청한다.

③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직급별 최저 승진소요연수와 업적기준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

④재임용과 승진임용이 동일자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승진임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8조(승진소요연수) ①교원의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연수는 다음과 같다.

직 명	소요연수
조 교 수 → 부교수	6년
부 교 수 → 교 수	5년

②승진소요연수 산정에 있어 타대학(교)의 동일직명 이상의 재직연수를 합산 인정할 수 있다. 단, 사립대학교원은 관할청에 임명보고된 자에 한한다.

③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승진임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될 수 없다.

1.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가. 정직 18월
 나. 감봉 12월
 다. 견책 6월
3. 승진심사일 현재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폐강된 경우는 제외)

제20조(승진임용 기준) ①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저 승진소요연수 내에 다음의 업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직 명	평가대상 기 간	영 역 별 평 점			필요최저 평 점 계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조교수 → 부교수	6년	3,804	720	192	4,716
부교수 → 교 수	5년	3,170	600	160	3,930

②제1항의 연구업적은 국제저명학술지, 국내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실적으로 한다.

③제1항의 연구업적에는 책임연구자인 논문이 부교수 승진시는 1편(회) 이상, 교수 승진시는 2편(회)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에 정한 평가대상기간은 승진임용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구업적은 승진심사 평가

직전일까지 인정된 실적으로 한다.
⑤제17조제2항에 의하여 타대학(교)의 동일직명 이상의 재직연수를 합산 인정받아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한 교원의 연구업적 인정의 기준은 본 대학 임용후의 업적만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업적과 봉사업적은 본 대학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기준을 월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5장 재임용

제21조(재임용 시기) 교원의 재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제22조(재임용 심사) ①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문서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재임용 탈락자에 대하여는 재임용 거부 의사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교원인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기초 자료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계약이행사항 여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23조(재임용 기준) ①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업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직 명	평가대상 기 간	영 역 별 평 점			필요최저 평 점 계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조 교 수	4년	2,360	400	60	2,820
부 교 수	5년	2,950	500	75	3,525

②제1항의 연구업적은 국제저명학술지, 국내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실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임용기간이 직급별 평가대상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교원업적요건은 영역별 평점을 평가대상 기간연수로 나누어 임용기간연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④제1항의 평가대상기간은 재임용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구업적은 재임용심사 평가 직전일까지 인정된 실적으로 한다.

제6장 정년보장임용

제24조(정년보장 임용대상 교원) 정년보장 임용대상 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수 승진임용 대상자
2. 교수직급으로 기간을 정하여 신규 또는 승진 임용된 교수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

제25조(정년보장 임용심사) 정년보장을 받고자 하는 교원 중 정년보장 임용의 업적기준(제20조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년보장 임용을 제청한다.

제7장 교원업적평가

제26조(교원업적평가) 교원의 업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제27조(보직교원 연구실적 인정) ①본부처(실)장 보직교원은 보직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실적을 인정한다.
1. 보직기간 1년 : 100점
2. 보직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 70점
3. 보직기간 6개월 미만 : 40점

②제1항에 정한 연구실적 인정은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연구영역 업적기준 점수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제8장 보수

제28조(보수) ①교원의 보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교수는 정년보장일로부터 6년 단위로 평가하며, 6년간의 업적이 다음의 업적기준을 미달할 경우 해당업적 충족시까지 호봉 승급을 제한한다.

직 명	평가대상 기 간	영 역 별 평 점			필요최저 평 점 계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교 수	6년	3,540	400	90	4,030

③제2항의 연구업적에는 국제·국내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실적이 최소한 1편(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2항의 평가대상기간은 평가일로부터 최근 6년을 역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평가대상기간은 충족 후부터 6년으로 한다.

제9장 복무 및 신분보장

제29조(복무) 교원은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원복무규정에 따른다.
제30조(겸직금지 및 특례) ①교원은 본 대학교 이외의 타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겸직이 허용된 경우
2. 학사지도 및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교원이 타 학교에 출강하거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술단체의 임원, 타 기관의 심사위원, 자문위원 등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휴직 및 복직)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2조(신분보장) ①교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부)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

제10장 포상과 징계

제33조(포상) 교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포상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징계) 교원의 징계 및 교원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영광학원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9. 1.>

제11장 기타

제35조(적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1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직중인 총장계약제 교원이 동일직명으로 이사장 신규임용 전환할 때의 연구실적은 이사장 신규임용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2. 제22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되어 현재 재직중인 총장계약제 교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심사시 1회에 한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심사시 1회에 한해 국제일반학술지를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
4. 제19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1일 승진심사 대상자는 1회에 한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승진소요년수는 교수 승진시는 4년 11월, 부교수 승진시는 3년 11월, 조교수 승진시는 1년 11월로 한다. 다만, 업적 평가대상기간은 제19조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일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임강사는 별도의 평가없이 재직연수에 따라서 조교수 해당연차로 전환한다.
2.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수

의 최저 승진소요연한과 교수업적기준(영역별 평점)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6년으로 임용된 조교수에 대해서는 재임용심사시 종전 규정의 업적기준을 적용한다.
2.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보장임용을 받은 교원은 2015년 3월 1일을 정년보장임용일로 산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 실장으로 임명된 교원에 대해서는 임명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및 제4항의 “강사”는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